

## (사) 점프 정관 신·구 대비표

현 행	변 경 안	변 경 사유
<p>제3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</li> <li>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</li> <li>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</li> <li>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</li> <li>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</li> <li>6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</li> <li>7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</li> <li>8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p>제3조(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쟁력 있는 대학생 인재 육성을 위한 멘토링 및 지식환원 지원</li> <li>2.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및 학습지도</li> <li>3.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</li> <li>4. 대학생 및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</li> <li>5. 사회적 경제 및 비영리 섹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</li> <li><u>6. 사회적 약자의 기회 증대를 위한 사업</u></li> <li><u>7. 모금, 홍보, 장학 사업</u></li> <li>8. 기타 위 제2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</li> <li>9. 위 각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</li> <li>10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p>-사회적 약자 기회 증대 및 사업 영역 확장 감안</p>



현행	변경안	변경사유
	<p>제46조(출자 및 용자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-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필요 항목</p>